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42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유용원 · 김성원 · 성일종
김소희 · 김재섭 · 나경원
강선영 · 임종득 · 김예지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하여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으로서, 이에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복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복무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4.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